장례비용 추계와 절감방안

우리나라 장례는 조상숭배사상과 명당선호의 영향을 받아 개인묘지 중심의 매장이 관행화되어 있으며, 장례용품, 장례서비스와 묘지구입 등 장례와 관련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간 장묘관련 총비용 규모는 약 1조 6156억원에 달하며, 이를 건당 장묘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638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장례비용의 절감과 바람직한 장묘문화의 정착을 위한 국민의식의 전환 및 장묘문화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묘비용과 관련된 사회병리적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李必道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1. 머리말

모든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경험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 예로부터 죽음에 따른 통과의례인 장례는 가족구성원과의 분리를 슬퍼하고 애석해 하는 효의 실천적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장례는 조상숭배사상과 명당선호의 영향을 받아 개인묘지 중심의 매장이 관행화되어 있으며, 장례용품, 장례서비스와 묘지구입 등 장례와 관련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계층의 장례는 사회적 지위의 과시수단과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장례관련 서비스업소들의 상혼까지 겹쳐 고비용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볼 때 향후 장례 및 묘지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묘관련 비용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장례행사에서 부담스러운 관행을 고쳐 나가기 보다 전래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전근대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장례관련 비용실태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허례허식적인 장례비용의 절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건성이 유지된 장례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등 바람직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현실성 있는 실천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2. 장례관련 서비스 및 비용규모

가. 장례관련 서비스 현황

장례관련 서비스는 장의서비스 및 장례식장, 장의자동차 서비스, 묘지 및 화장관련 서비스 등의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장례서비스는 장례라는 특수한 상황 및 제도적 환경에 기인한 경쟁 제한적 요소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 장의 서비스업 및 장례식장

장의 서비스업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장례에 소요되는 장의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시신의 염습, 분향소 설치 등 이에 따른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장의사, 장례식장(병원영안실), 농협의 장례서비스, 기타 종교단체에의 장례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의 서비스업은 전체 90% 이상이 1~2인의 영세 소규모업체였으나, 1994년 면허개방과 이에 따른 신규진입이 늘어남에 따라 영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병원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시장경쟁력을 갖춘 대형 장의업체가 늘어나고, 경영의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병원장례식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임대업자와 병원과의 배타적 계약관계로, 병원측에서 임대료를 과다하게 책정하며 임대업자는 과다한 임대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1988년 이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장의용품 판매 및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농협의 장례서비스는 장례시에 사용되는 장례용품과 조문객 접대시 음식물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장례비용을 절감해 주며 건전하게 장례를 치루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천주교 성당을 중심으로 종교단체에서 시신보관 냉장실과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고 신도들의 장례를 위한 편의시설 및 장례서비스를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장소사용료와 염습비는 별도로 없으며, 장의용품도 염가로 제공하고 있지만 신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2) 장의자동차 서비스업

장의자동차 서비스업은 발인지로부터 장

지까지 시신을 운구해 주는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으로 1995년 이전까지는 기본요금과 장지거리에 따른 추가요금과 대기료 등으로 구성된 고시가격제였으나, 1996년 이후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장의자동차의 경우는 장의업체의 알선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장의업자에게 건당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경우가 관례화되어 있으며, 이는 결국 장의차 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가되고 있다. 장의자동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도 거래관계에 있어 공식요금 이외에 노잣돈이라 하여 추가로 요구되는 비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묘지관련 서비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집단묘지는 공설공원묘지와 사설공원묘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설공원묘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직접 운영 또는 공공기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설묘지와 화장장, 납골당이 포함되며, 사설공원묘지는 일반 사설묘지와 사설납골당을 의미한다.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용지침』 제24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 최고한도액을 고시하고 있으며, 물가연동에 따른 사용료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설공원묘지에서는 석물과 조경비, 축대비용 등을 포함한 부대시설 명목으로 고시가격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묘지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묘지사용료와 함께 연간 또는 영구관리비로 구분하여 고시하고 있다. 비영리재단법인체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설공원묘지는 영구관리비를 받고 있어 묘지의 영구화라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매장묘지의 수요증가에 대비한 묘지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묘지사용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화장 및 납골 서비스

화장장은 전국에 46개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납골당은 전국에 54개(납골안치능력 26만 7천기)로 화장장 또는 종교시설에 부설 운영되고 있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장장 및 납골시설은 노후된 재래식시설로 인한 환경문제를 유발하여 이미지가 나쁘게 형성됨은 물론 주차장, 소각시설, 분향소 등이 미흡하다. 또한 화장 및 납골당 사용료는 묘지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며 대부분의 화장 및 납골당이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저소득자의 배려 및 화장장려 방안의 하나로 사용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이 화장 및 납골당을 이용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화장을 기피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나. 장례관련 비용규모 추정

장묘관련 비용은 장례장소와 장례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초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평균적 장묘비용을 추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여기

서는 장례방법별 장례건수를 추정한 후, 장묘관련 비용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장례서비스업체의 현지방문으로 확인한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장례 구성요소별 비용규모를 추정하였다.

1) 장례건수의 추정

인구구조의 노령화는 사망자 규모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 장의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례장소 및 장례방법별 장례건수는 장례장소와 장례방법에 따라 장례비용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

1997년 연간 사망자수는 253,000여 명이며(1일 평균 사망자수는 693명), 총 장례건수는 총사망자수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면, 연간 장례건수는 253,000건, 1일 평균 장례건수는 690여 건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사망장소별 사망자 비율에 기초하여 자택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집에서 장례를 치루고(66.0%), 병원 및 기타 장소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장례식장(병원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루는 것(34.0%)으로 가정하였다. 장례방법별 장례건수는 매장의 경우 각각의 분묘매장 가능기수 비율과 화장률(25%)의 비율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2) 장묘관련 직접비용 추계

장묘관련 비용은 크게 장례관련 비용, 묘지관련 비용, 화장관련 비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장례관련 비용은 장의용품비, 장례식장 사용비, 조문객 접대비, 장의자동차 임대료 등이며, 묘지관련 비용은 묘지사용료, 관리비, 부대시설비(비석, 상석, 인건비 등) 등이 포함된다.

장례에 필요한 장의용품은 망자에게 쓰이는 것과 빈소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물품, 그리고 유족에게 필요한 용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례식장 사용비는 병원 영안실이 장례식장으로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임대료에 시신안치료를 포함한 비용을 말하며, 장의자동차 임대료는 장례에 있어서 발인지로부터 장지까지 시신을 운구해 주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묘지사용료와 관리비는 묘지조성을 위해

표 1. 장례장소와 장례방법별 장례건수

(단위: 건, %)

	사망자수	장례장소		장례방법			
		자택	장례식장	매장			화장 및 납골
				공설묘지	사설묘지	개인묘지	
장례건수	253,000 (100.0)	166,980 (66.0)	86,020 (34.0)	14,421 (5.7)	44,528 (17.6)	130,801 (51.7)	63,250 (25.0)

투자한 비용(개발비, 조경비, 축대비, 잔디비 등)과 공원묘지내 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비는 비석, 상석,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장묘비용 조사결과를 근거로 몇 가지 가정을 통해 각 단계별 장묘관련 총비용 규모를 추정하였다. 장묘관련 총비용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가) 장의용품 및 장례식장 비용

장의용품은 장례방법 및 풍습,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편이며, 품질과 규격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심하다. 일반적 장례용품은 수의와 관의 비용이(관의 경우 60~80만원, 수의는 100~120만원대임) 상당한 비중(60%)을 차지하고 있다. 장의업협회의 조사자료(1996년)에 따르면 매장의 경우 소비자들의 보편적인 선택범위인 중품기준으로 200만원 정도이며, 화장인 경우는 관과 수의가 저렴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95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병원장례식장 임대료는 7~40만원(1일 기준)으로 분향소 면적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제시되고 있으며, 임대료와 시신안치료 등을 포함하여 평균 6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장묘관련 총비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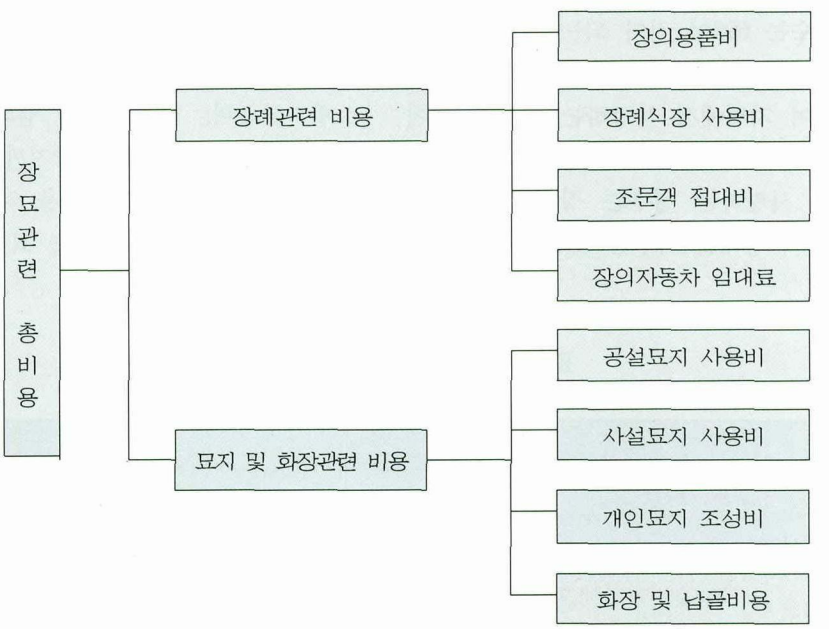

- 장의용품 비용 : 4396억원
  - 매장인 경우 : 3795억원
    = 189,750(연간 매장건수)×200만원
  - 화장인 경우 : 601억원
    = 63,250(연간 화장건수)×95만원
  - ※ 건당 장의용품비 : 174만원
    = 4396억원÷253,000건(총 장례건수)
- 장례식장 비용 : 516억원
  = 86,020건(장례식장 이용건수)×60만원

나) 조문객 접대비용

조문객의 접대비용은 혼례의 피로연 비용과 마찬가지로 장례장소 및 조문객의 수와 접대시 준비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많다. 과거 조문객 접대는 주로 가정에서 준비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장례식장의 식당이나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조문객 접대비는 소비자보호원(1990년)의 조사자료(평균 111만원)를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였다고 가정하면 평균 164만원(1997년) 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 조문객 접대비용 : 4149억원
  = 253,000건(총 장례건수)×164만원

다) 장의자동차 서비스 비용

장의자동차 비용은 공식요금 이외에 소위 노잣돈(기사 수고료)이라는 명목으로 추가요금이 관행화되어 있다. 장의자동차 임대료는 기본운임, 거리운임, 대기료와 노잣돈을 포함하여 평균 400,000원(장지와의 평균 왕복거리 200km 기준) 정도 드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 장의자동차 비용 : 1012억원
  = 253,000건 x 40만원
  ※ 건당 장의자동차비용 : 40만원
  = 150,000원(기본)+5,000원×200km(거리)+
  5,000원×10시간(대기료)+10만원(기사 수고료)

라) 묘지관련 비용

(1) 공설공원묘지

공설묘지의 묘지사용료는 평당 16,000~140,000원이고, 연간관리비는 4,000~30,000원 정도로 부대시설비를 포함한 금액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사자료를 근거로 실제 공설묘지 사용에 드는 비용을 보면 160만원(2평 기준)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공설공원묘지 비용 : 231억원
  = 14,421(연간 매장건수)×160만원(1기당 묘지비용)

(2) 사설공원묘지

사설공원묘지는 묘지관리비 및 부대시설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묘지사용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 사설공원묘지는 평당 130,000~450,000원으로 공설묘지보다는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설공원묘지 1기당(3평 기준) 평균 450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 사설공원묘지 비용 : 2004억원
  = 44,528(연간 매장건수)×450만원(1기당 묘지비용)

(3) 개인묘지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는 개인 및 문중소유의 임야 또는 밭의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산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여기서는 사유지 구입가격을 제외한 묘지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과 부대시설비를 감안하여 개인묘지 1기당(12평 기준) 조성비용을 27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 개인묘지 조성비용 : 3532억
  = 130,801(연간 매장건수) x 270만원
  ※ 1기당 묘지조성비: 270만원
  - 부대시설비(비석, 상석 등) : 80만원
  - 평당 작업비 : 180만원(150,000 x 12평)
  - 기타 비용 : 10만원

마) 화장관련 비용

화장 및 납골을 할 경우 관, 수의 등 장의용품을 저렴한 것을 사용하며 묘지사용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또한 화장장려책의 일환으로 화장수수료(건당 화장료가 15,000~90,000원, 납골보관료는 15,000~120,000원임)는 매장의 경우보다 비용면에서는 훨씬 저렴하여 건당 5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 화장 및 납골비용 : 316억원
  = 63,250(연간 화장건수)×50만원(건당 화장비용)

이상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연간 장묘관련 총비용 규모는 약 1조 6,156억원에 달하며, 이를 건당 장묘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638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세분하여 보면 장례비용은 장의용품 및 장례식장 사용비, 조문객 접대비, 장의자동차 임대료을 포함하여 연간 10,073억원(62.4%)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장례 1건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평균 398만원이다. 묘지사용의 연간 지출규모는 5,767억원(35.7%)이며, 1기당 묘지사용비는 평균 304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화장 및 납골관련 비용규모는 전체 비용의 2%에도 못미치는 3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장례비용의 문제점

최근의 장례관행은 간소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측면도 있지만 개인묘지 위주의 매장관행으로 전반적인 장례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비용측면에서 볼 때 장례의 문제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 민간신앙과 유교적 이념에 따라 장례의 형식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특히 유교적 가족제도의 뿌리는 장례절차 및 방법의 결정사항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과다한 장례비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체면 및 과시문화의 전반적 확산은 장의용품, 조문객 접대비, 묘지관련 비

표 2.장례 구성요소별 장례비용

	건당 비용(만원)	총비용(억원)	구성비(%)
총 계	638	16,156	100.0
- 장례관련 비용	398[1]	10,073	62.4
• 장의용품비	174	4,396	27.2
• 장례식장비	60	516	3.2
• 조문객접대비	164	4,149	25.7
• 장의자동차비	40	1,012	6.3
- 묘지 및 화장관련 비용	240[2]	6,083	37.6
• 공설공원묘지	160	231	1.4
• 사설공원묘지	450	2,004	12.4
• 개인묘지	270	3,532	21.9
• 화장 및 납골	50	316	1.9

주: 1) 장례관련 건당 비용에 있어서 장례식장비는 실제 이용비율을 감안한 후 합산한 것임(건당 비용=장례관련 총비용÷총장례건수).
2) 건당 묘지 및 화장관련 비용은 공원묘지, 개인묘지, 화장 및 납골의 이용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것임(건당 비용=묘지 및 화장관련 총비용÷총장례건수).

용 등에서 고비용을 유도하고 있다. 장례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세력과시 및 체면유지, 남의 이목을 의식한 과다한 지출, 사회전반적인 과소비 분위기의 영향은 장례를 낭비성으로 흐르게 하는 경향이 있다. 조문객 접대와 부조금 수수관행은 상호가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이를 고쳐 나가기 보다 전래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장례 비용조달에 있어서도 부조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사회적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로는 장례관련 서비스 업체들의 무분별한 상업주의적 경쟁으로 장례의 의식과 절차가 갖는 본래의 의미는 점차 퇴색하는 반면, 물질적 이익과 비용적인 요소로서 그 의미가 남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자식된 도리라는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장례비용은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불만보다는 다른 비용과 비교하여 거래관계에서의 공식가격 이외 노잣돈 혹은 웃돈 강요가 관행화되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관행은 소비자의 태도와 비합리적인 가격제한 정책 등 제도적인 결함에 기인하기도 한다.

표 3. 장례 구성요소별 실천내용

장례구성요소	실천 내용
장례 절차	유교적 이념에 따른 전통적 장례 또는 기독교, 불교 등 고인의 종교에 따라 임종에서부터 하관에 이르는 간소화된 장례절차를 진행함.
장례 장소	병원장례식장, 전문장례식장 외 기타 종교시설의 이용을 확대해 나감.
조문객 범위 및 부의금	인쇄물에 의한 부고행위 금지와 부의금의 교환범위를 친·인척 및 가까운 이웃으로 제한하도록 함.
문상 및 조문객접대	경건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상주와 그 가족을 위로함. 조문객에게 간단한 다과류를 제공토록 하며, 주류접대, 화투, 밤샘관행을 금지토록 함.
묘지사용	묘지사용은 단위면적(6평 이하)과 사용기간(75년)을 제한하고, 매장과 화장을 접목시킨 가족형 합동분묘형식을 권장토록 함.

3. 장례의 고비용구조 개선방안

장례절차는 일부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오랜 전통과 관습에 따라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장묘관행은 묘지수요를 증가시켜 묘지관련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즉, 우리의 장묘관습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서 비용에 있어서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치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널리 퍼져 있다. 특히,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낭비적, 과시적 장례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전반적인 체면중시 현상과 장례서비스 업체의 상업주의와 맞물려 고비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묘문화에 있어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국민의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묘비용과 관련된 사회병리적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장묘비용의 절감과 바람직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은, 첫째, 건전한 장례모델을 설정하여 단계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장묘관련 종합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통한 장례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셋째, 부조금 수수 관행을 개선하며, 범시민운동차원의 모범적인 장례실천 사례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 건전한 장례모델의 설정

장례에 있어서는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체면문화와 자신의 사회경제적 세력과시, 그리고 남의 이목을 의식하여 과다한 장의용품, 호화분묘, 과시적 부조금

지출 등 장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장례와 관련하여 허례허식적이며 호화, 낭비적인 영역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가장 유효한 방안은 건전 장례모델을 설정하고 사회지도층 및 공직자가 먼저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는 타사회계층의 동의를 얻어 전국민에게 쉽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장례관련 종합서비스 체계의 구축

장례 서비스업의 전근대적 영업관행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는 소비자의 불만을 반영할 필요가 없었던 장례 서비스업의 폐쇄성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장례장소와 영업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병원영안실 이외의 전문장례식장, 농협의 장례사업, 종교기관 등 장례관련 서비스 시설을 다양화하며, 장묘관련 종합서비스를 유도해야 한다. 장묘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인 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

장묘관련 종합서비스는 장례행사에 필요한 절차와 정보, 장의물품, 장례 및 묘지관련 시설이용, 그리고 행정절차 등 모든 서비스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즉, 장례종합서비스는 사망에서부터 장례식, 매장 또는 화장, 그리고 유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전과정을 관리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장묘관련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장례종합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기존의 민간 장묘서비스업체와 상호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장례종합서비스센터는 주요 장의물품 및 장례서비스의 품질에 따른 권장가격의 자료를 제공하고 장례용품의 구입시는 물론 문상객들이 평소에 장례 및 묘지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종합장례서비스센터의 운영은 장례절차의 간소화 및 장묘관련 시설의 선진화를 가져오게 되며, 장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부조금 수수관행의 개선

사회적 영향을 과시하기 위한 무분별한 조문객 초청 행위와 신문 등 인쇄물을 통한 부고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 부조금 금액은 전통과 관습을 고려하여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적정금액을 권장하고,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 이외에는 부조금을 받지 않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장례식장에서 금전을 주고 받는 문화가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상호부조의 의미가 왜곡되어 변질된 것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건전한 장묘문화는 가족행사화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며, 자립적으로 장례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경조사에 대비한 다양한 저축 및 보험상품을 개발, 보급하

여 장례비용을 저리로 조달, 장기에 걸쳐 분납함으로써 부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4. 맺는말

장례행사에 있어서 혈연중심의 한 공동체인 가족을 의식하고 가족구성원의 결속강화를 공식적으로 상징화하고 있는 핵심적 기능은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장례에 있어서 비용문제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당사자도 있지만 계속 존속하기를 바라는 집단도 있으며, 또 실제로 이익을 얻으려는 집단도 상당수 존재하게 된다. 장례비용의 절감문제는 단순히 개인과 가족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이해집단들의 상호이해와 사회 전체의 공동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장례는 사회관습적 영역으로 일시에 변화를 유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적 지원의 강화, 홍보활동 및 시민운동을 통한 의식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건전한 장례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장례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장묘제도의 개선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국민 대다수가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처벌위주의 사후대책보다는 화장 및 납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국민정서와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상호타협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내고 현실성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